
「 」

[2010. 2. 1] [가 157 , 2010. 2. 1,]

() 02 - 2023 - 7309

1 () 「 」 16 2 3 ()

) , , .

2 () . < 2010.2.1 >

1. " " 가 (" ") .

- 가. : , , , ,
- . : , , , 가
- . : , , , , , ,
- . : , ,

2. " " 가 .

가. 「 」 가 가

- . . .
- .
- .

3. " " .

4. " " .

3 () . . ()

(" ") 1

.

4 () .

1. 6 1

2.

1 2 . ,

. . .

「 」 3 ,

5 ()

. < 2010.2.1 >

- 1. .
- 2. .
- 3. [(), , , ,]
- 4. - (CJD) - (vCJD)

6 ()

3

4

7 ()

1

- 1. 4
- 2. (.)
- . . 1 7 2

1 가

1

. . . < 2010.2.1 >

1.

2.

가.

.

.

3.

3 . . 2

1 가 . . 2 2

. . . < 2010.2.1 >

8 ()

4

() . < 2010.2.1 >

1

가 1

9 ()
4

3
1 20

10 ()
1. 5
2. 6

7

1 2 3

11 ()

< 157 ,2010. 2. 1 >

[별표 2]

세탁물의 처리 기준(제4조제4항 관련)

1.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2.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3.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.
4.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5.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별표 1]

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(제3조 관련)

1. 세탁물의 보관 기준

가. 수집

- (1)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, 위생적이어야 한다.
- (2)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,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(붉은색이나 노란색)나 "오염세탁물" 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
나. 보관

- (1)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·식당·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,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,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,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.
- (3)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(4)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.
- (5)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,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.
- (6)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(7)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2. 세탁물의 운반 기준

가.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.

나.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.

다.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.

라.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.

마.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.

[별표 3]

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1. 작업장

- 가.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,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, 식당·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.
- 나. 내벽은 내수성(耐水性)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.
- 다.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,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·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.
- 라.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마.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바. 오염작업구역(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)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.
- 사.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.
※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시설 및 장비기준(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)

- 가.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 - (1) 고압 보일러: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.
 - (2) 소독시설: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3) 세탁기: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.
 - (4) 탈수기: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.
 - (5) 건조기: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(자동 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).
 - (6)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나.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, 세탁 중, 세탁 완료,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
 - (1)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
 - (2)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
 - (3)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
 - (4)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
 - 다.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(驅蟲)·구서(驅鼠)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,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.
3. 탈의실(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):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.
4. 창고 등(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):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·세제,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닛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.

[별표 4]

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1. 작업장

- 가.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·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나.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(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.
- 다.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·콘크리트 및 인조석 깔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,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·인조석 깔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.
- 라.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.
- 마. 충분한 채광·조명·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바.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사.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. 다만,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 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.
 - (1) 오염작업구역: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.
 - (2) 준오염작업구역: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.
 - (3) 청결작업구역: 건조·다림질·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.
- 아.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.

2. 시설 및 장비기준

- 가.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 - (1) 고압보일러: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.
 - (2) 소독시설 :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3) 세탁기 :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.
 - (4) 탈수기 :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.
 - (5) 건조기 :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(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).

(6) 다림시설 :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
(롤러기·프레스기 등).

(7) 수선시설 :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(재봉틀 등).

나.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
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, 세탁 중, 세탁 완료,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
한다.

(1)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

(2)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

(3)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

(4)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

다.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·구서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, 그리고 이를 보
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.

3. 화장실 :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
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.

4. 탈의실

가.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.

5. 창고 :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·세제,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
를 갖추어야 한다.

6. 운반차량

가.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(積載庫)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
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1대의 차량으로 수
집·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
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.

다.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.